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5.08.18.(월) ~ 2025.08.20.(수) 3일간
제출 장소	'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'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-6)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*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 함.

* 주민등록표등·초보기족관계증명서·서류인·국민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·"세대주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 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어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아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입니다.

*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* [주택공급에 관한 규정] 제24조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 이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/ 이후 폐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<input type="radio"/>		신분증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 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<input type="radio"/>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• ※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•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•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명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•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재된 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 까지 지정하여 발급 • ※ 주민센터 또는 경부 24 발급 가능 •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• ※ 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<input type="radio"/>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
	<input type="radio"/>		청약 가점점수 신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• ※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 까지 지정하여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<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> *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 까지 지정하여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: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직계비속: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·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3년 이상의 고거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세대주 성명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•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<input type="radio"/>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• - 모진공고일 기준 고거 3년간의 내역
	<input type="radio"/>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•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공동공고일 기준 고거 1년간의 내역)
	<input type="radio"/>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대(계약서 낙찰 증명서) 및 기타 허가 결정경매 매각 결정 통지서 공개 등 • 등기 사항증명서(임차주택)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• *예시) 경매·배당형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·분할 계산서 등
	<input type="radio"/>	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물 등기 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 등 무허가 건물 확인서, 건축물 철거 멀티신고서 등 • "소형 · 저가주택 등" 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